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2021년 4월 5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4월 4일(일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1. 4. 2.(금)	담당부서	재생에너지산업과
담당과장	문양택 과장(044-203-5370)	담 당 자	오유경 사무관(044-203-5375)

2021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공고 및 접수 실시

- 20년 대비 12%(330억원) 증가한 총 3,112억원 지원 -

- 건물태양광 지원한도 상향조정(50kW→200kW) 및
건물일체형태양광(BIPV) 지원예산 확대(5억원→105억원) 등을 통해
주택·상가·공공시설 옥상 등에 자가소비용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확대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성윤모)는 **4.5(월) 2021년「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(주택지원, 건물지원 등)」**을 공고하고, **신청접수**를 받는다고 밝혔다.

○ **보급지원** 사업은 주택 또는 건물 소유주가 **자가 소비를 목적**으로 태양광, 지열 등 **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**하는 경우 **설치비의 일부를 지원**하며,

○ 사업규모는 신재생에너지 설치 수요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**'20년 대비 12%(330억원) 증가한 3,112억원**이다.

* 주택지원·건물지원·융복합지원·지역지원 : ('20) 2,782억원 → ('21) 3,112억원

□ '21년 **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사업의 주요 지원대상**은 다음과 같다.

① 주택·건물지원 (1,435억원)

○ 주택·건물지원 사업은 **단독·공동주택, 상가·공장** 등에 **자가 소비 목적**의 **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**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한다.

○ 올해부터는 **공장, 물류창고 등**의 경우 **희망 설치용량이 큰 점**을 감안하여 **건물 태양광 보조금 지원 용량을 기존 50kW에서 200kW까지 상향 조정**하였다.

○ 아울러, **국가 R&D로 개발된 제품**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**시범보급 사업** 및 **건물일체형 태양광(BIPV)** 등 신기술이 적용된 설비에 대한 **지원을 확대**하였다.

* 시범보급 : ('20) 50억원 → ('21) 100억원, BIPV : ('20) 5억원 → ('21) 105억원

< **주택·건물지원 사업 주요내용** >

❶ 지원 대상
- 주택지원 : 단독주택·공동주택·공공임대주택에 태양광·태양열·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시 설치비 지원
- 건물지원 : 상가·공장 등의 건물 및 시설물(주차장, 방음벽 등)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시 설치비 지원

❷ 신청자 : 주택 및 건물 소유주

❸ 설치비 보조율 : 50%(BIPV 및 연료전지의 경우 70%)

❹ 설치용량 한도 : 단독주택 3.3kW 이하, 공동주택 30kW 이하, 상가·공장 등 건물 및 시설물 200kW

② 융복합지원·지역지원 (1,677억원)

○ 융복합지원은 **주택·상가·공공기관 등의 복합지원 대상**에 대해 태양광, 태양열, 지열 등 **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융합**하여 **마을 단위로 보급**하는 사업에 대해 설치비를 지원한다.

○ 지역지원은 **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**하는 **건물 및 시설물, 사회복지시설 등**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지원한다.

○ 특히, 최근 점차 높아지고 있는 지역의 그린뉴딜 참여 수요를 반영하여 **'21년 융복합지원 예산**은 **전년 예산 대비 약 40% 증액, 1,577억원 규모로 확대**되었다.

* 융복합지원 예산 추이 : ('19) 635억원 → ('20) 1,122억원 → ('21) 1,577억원

○ 한편, 융복합지원사업 및 지역지원사업의 경우 **'22년도 사업**에 대해 신청접수를 받아 **사업 수행 지방자치단체(또는 컨소시엄)**를 **선정**할 계획으로 공개평가 및 총괄평가 등을 거쳐 **올해 9월에 최종 선정**될 예정이다.

- 금번 공모에서는 주민자치센터, 마을회관 등 **지역의 공공시설 및 사회복지시설**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**지역 지원의 국비 비중을 상향 조정**(前 45% → 後 50%)하고,

- 지방자치단체의 **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이행비율을 초과하는 설치 용량분**에 대해 **설계 단계부터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**하였다.

 * 공공기관이 연면적 1,000m^2이상 신축·증축·개축시 예상 에너지 사용량의 30% 이상('22년~ 32% 이상)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의무

- 아울러, 융복합지원 사업의 취지를 감안하여 태양열, 지열 등 일정 비율 이상의 **태양광外 에너지원을 보급**하는 경우 **가점을 부여**하는 등 **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의 보급 확대**를 위해 제도를 개편하였다.

< 융복합·지역지원 사업 주요내용 >

❶ 지원 대상
- 융복합지원 : 주택·상가·공공기관 등의 복합지원 대상에 대해 태양광, 태양열, 지열 등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융합하여 마을 단위로 보급하는 사업
- 지역지원 :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 및 시설물, 사회복지시설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비 지원

❷ 신청자 :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(공공기관) 컨소시엄

❸ 설치비 보조율 : 50%(BIPV 및 연료전지의 경우 70%)

□ 산업부는 '21년 보급지원 사업을 통해 건물 옥상, 주차장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**총 295MW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**이 확대되어 **연간 580억원의 전기요금 절감** 및 **연간 17만tCO$_2$의 이산화탄소 감축효과**가 기대된다고 밝혔다.

○ 또한, **여름철 풍수해 집중시기 이전**에 보급사업으로 설치된 **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점검을 실시**하고, **철저한 설치확인 및 사후관리**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.

□ 한편, 동 사업의 수행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은 태양광설비 설치와 관련한 정부사업 사칭 및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**소비자피해 콜센터(☎1670-4260)**를 **운영**하고 있으며, **참여기업**에 관한 정보는 공단 **그린홈 홈페이지**(https://greenhome.kemco.or.kr)에서 **확인** 가능하다.

○ 금번 공고와 관련된 **보다 자세한 내용**은 **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**(www.motie.go.kr) 또는 **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**(www.knrec.or.kr)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오유경 사무관(☎ 044-203-537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